



화루이펑 전자 과학 기술 (집단) 주식 유한공사 VS 미국 초전도 회사(American Super Conductor Corporation) 등 48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4) 高民终字第 2344号
판결 일자	2014년 8월 7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승)
원심원고(피상소인)	1. 미국 초전도 공사, 2. 미국 초전도 Wintec 유한책임공사, 3. 쑤조우 메이인 초전도 유한공사 (미국계 외자기업)		
원심피고(상소인)	1. 화루이펑 전자 과학 기술 (집단) 주식 유한공사, 2. 쑤리잉, 3. 신리푸, 4. 자오하이춘 (2, 3, 4는 상소하지 않음)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9조		
영업비밀	풍력 발전기 전기제어 시스템(ECC)		
키워드 (Keyword)	중재조항(仲裁条款), 계약분쟁(合同纠纷), 지적권 침해분쟁(知识产权侵权纠纷), 지정관할(指定管辖),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들은 풍력 발전기의 설계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미국계 공사이다. 원심 피고 화루이펑 전자 과학 기술 (집단) 주식 유한공사(이하 '화루이펑 공사')는 2008년 경 원심 원고 쑤조우 메이인 초전도 유한공사(이하 '메이인 초전도 공사')와 <전기 상품 외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공급 및 기술이전을 받았다. 원심 원고들은 2010년 8월부터 원심 피고 화루이펑 공사가 풍력발전 공장에 불법적으로 개조한 풍력발전기 세트 제어 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였다.

원심 원고들이 나아가 조사해 보니, 화루이펑 공사가 고액 연봉 등 불법 수단을 써서 원심 원고들의 기술직원을 데려가고, 원고의 1.5MW 풍력 발전기 제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절취하여 무단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심 원고들은 원심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화루이평 공사는 본 사건이 계약분쟁이므로 체결된 <구매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관할권 이의를 하였다. 1심 법원은 본 사건을 계약 분쟁이 아니라고 보아, 화루이평 공사의 관할권 이의를 기각하였다. 화루이평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피상소인)	⇔	원심 피고(상소인)
본 사건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가 다투어지는 민사 분쟁이므로, 중재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본 사건은 계약분쟁에 속하므로, 중재기구에 의한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본 사건은 북경시 고급 인민법원이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39조에 의하여 1심 법원으로 관할권 지정하였다.		본 사건이 민사소송을 범주에 속하더라도, 북경법원은 본 사건에 관할권이 없다.

04 판결 요지

본 사건은 화루이평 공사가 불법적으로 관련 설비 전기 제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절취하고, 독단적으로 전기 제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행위에 의거한다. 본 사건에서 소송이 제기된 권리침해행위는 일종의 독립한 민사 분쟁이고, 계약분쟁이 아니므로, 중재조항은 본 사건에 활용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은 인민법원의 주관 범위에 속한다.

북경시 고급 인민법원이 개정 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관의 '지정관할'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본 사건 1심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였으므로, 화루이평 공사는 해당 관할권 이전 결정으로 확정된 관할법원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05 Key Point

중국에서는 특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관할권을 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판결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매계약>에 계약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계약 분쟁이 아닌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분쟁은 독립한 민사 분쟁으로 인민법원이 주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 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관에,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 관할의 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고, 본 법원 관할의 1심 민사사건을 하급 인민법원이 심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본 사건에서, 북경 고급인민법원에서 위 규정에 근거해 직권으로 1심 관할 법원을 지정하였으므로, 사건의 당사자는 이에 대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